

<p>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민족통일운동 및 농촌부흥운동 등 크나큰 업적을 남기고 서거하신 백범 김 구 선생님의 거주지인 경교장을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독립운동정신 및 민족정신을 간직하도록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p> <p>○ 지방문화재 지정촉구 현황 - 위치: 종로구 평동 108 - 건물: 264평(지하1층, 지상2층) ○ 사용자: 강북삼성병원(구고려병원)</p>	<p>우리 委員會에서는 2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현 관계법상의 청원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國·公有地 점용사용료 인하를 위해서는 國有財産法施行令과 地方財政法施行令 개정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p> <p>청원인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同 法令 改正을 中央政府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 本會議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p> <p>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가결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p>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21. 公有財産管理條例의改正과市有地占用料및拂下代金引下調整에關한請願(李子源議員 紹介) (16時 30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公有財産管理條例의 改正과 市有地占用料 및 拂下代金引下調整에 關한 請願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p> <p>財務經濟委員會 李亮漢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李亮漢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財務經濟委員會 소속 李亮漢議員입니다.</p> <p>제14회 定期會 기간중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한 公有財産管理條例의 改正과 市有地占用料 및 拂下代金 引下調整에 關한 請願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p> <p>同 請願은 1996년 2월 22일 建設委員會 소속 동작구 출신인 李子源議員의 소개로 장운환 의 224명이 제출하여 1996년 2월 23일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p> <p>同 請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동작구 노량진1동 217-38 일대, 노량진2동 및 상도2동의 일부 國·公有地를 점유한 무허가촌에서 30여년간 거주해 온 주민들로서 國·公有地 점용사용료를 인하하며, 평당 26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책정된 國·公有地財産 불하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불하대금 납부방법을 2년에 걸쳐 9회 분납과 가산금없이 지체이자율 5%를 적용하도록 國有財産法施行令과 地方財政法施行令,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改正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p>	<p>그러면 公有財産管理條例의 改正과 市有地占用料 및 拂下代金 引下調整에 關한 請願을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市議會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과 사유지점용료 및 불하대금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 의견서</p> <p>○ 동작구 상도1동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민들은 도시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 국·공유지 매각가격과 점용사용료가 생활형편에 비하여 과다하게 불하 및 부과되었다고 판단하여 청원하였음. ○ 국·공유지 불하대금과 점용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의 선행조치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인들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 바람.</p> <p>22. 市立病院建立에關한請願(朴贊秀議員 紹介) (16時 33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市立病院 建立에 關한 請願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p>